

학교상담법은 교사에게 상담 업무를 추가하는 법이 아니라, 이미 교사에게 무질서하게 떠넘겨진 학생 마음 관련 업무를 정리하고, 역할·시간·책임·보호를 법으로 분명히 하자는 법이다.

1. 먼저 우려를 인정해야 합니다

학맞통 논란에서 교원단체들이 제기한 핵심 우려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지원 체계를 통합하려는 법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인력·예산 부족, 모호한 역할 분담, 교사 업무 전가 우려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교총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 없이 관리자 중심 협업 구조, 교육청·지원청 지원 체계라는 모호한 로드맵만 제시했다”고 비판했고, 전교조도 학교가 아닌 교육청·교육지원청 주도의 지원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조사 보도에서는 교사들이 학맞통 시행으로 우려되는 점으로 ‘업무 중복 또는 과중’, ‘업무 분장에 따른 구성원 갈등’, ‘학교 본연의 역할 훼손’을 꼽은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cnfta.or.kr

그러니 학교상담법을 말할 때도 “교사에게 더 하라는 법이 아니다”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우려를 “오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우려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2. 학교상담법은 ‘상담 추가법’이 아니라 ‘업무 경계 설정법’입니다

학교상담법에 대한 답변의 첫 문장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학교상담법은 담임교사에게 전문상담을 떠넘기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담임교사에게 떠넘겨지는 위험관리, 민원 대응, 외부기관 연계, 기록 책임을 줄이고, 상담교사·관리자·교육청·전문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자는 법입니다.”

침부한 학교상담법 10대 원칙도 이 방향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원칙 5는 담임교사가 학생의 생활 맥락을 읽는 1차 교육상담자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담임교사에게 상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국가와 교육청이 시간, 공동 사례회의, 연수·수련, 슈퍼비전, 행정업무 경감, 처우, 법적 보호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학교상담법은 “담임교사가 상담까지 하라”가 아닙니다.

“담임교사가 학생을 가까이에서 보는 교육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외의 전문상담·민원·위기판단·행정처리 책임을 분리하라”는 법입니다.

3. 담임교사의 역할은 ‘치료자’가 아니라 ‘생활 맥락을 보는 사람’입니다

학교상담법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잘못 말하면 바로 공격받습니다.

“담임교사가 상담까지 하라는 거냐?”

“교사가 정신건강 전문가냐?”

“수업도 하고 행정도 하는데, 상담까지 어떻게 하냐?”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담임교사는 치료자가 아닙니다. 정신건강 진단자도 아닙니다. 전문상담사를 대체 하지도 않습니다.

담임교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학생이 언제 무너지는지 본다.

어떤 친구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리는지 본다.

수업 시간에 어떤 장면에서 회피하거나 폭발하는지 본다.

학생이 자주 쓰는 말, 몸으로 보이는 반응, 학교생활의 변화를 관찰한다.

그 관찰을 상담교사와 함께 나누어 학생 지원 방향을 정한다.

이것은 추가 업무라기보다 담임교사가 이미 하고 있는 교육적 관찰을 상담 체계 안에서 의미 있게 쓰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담임교사가 이 일을 해도 보호받지 못하고, 안 해도 책임을 묻습니다. 학교상담법은 이 모순을 정리해야 합니다.

4. 상담교사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교사 업무가 줄어듭니다

학교상담법이 교원 업무를 늘리는 법이 되지 않으려면, 상담교사의 독립적 전문성을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첨부된 10대 원칙은 상담교사를 “검사 결과 처리자나 외부기관 연계 담당자”가 아니라, 학생의 내면, 관계, 자기이해, 학교생활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담임교사와 협력해 학교 안 회복 과정을 설계하는 교육상담 전문가로 규정합니다. 또한 학생상담 계획 수립권, 상담 내용 보호 권한, 담임교사에게 전문 자문을 제공할 권한, 공동 사례회의 요청권, 위기 수준 평가와 의료기관 연계 의견 제시권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담임교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담임교사는 “내가 이 학생을 어떻게 상담해야 하지?”가 아니라,

“내가 본 생활 장면을 상담교사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함께 판단할 것인가?”로 역할이 정리됩니다.

상담교사는 “검사 결과 처리 담당자”가 아니라,

“학생의 마음과 관계 회복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관리자는 “민원이 오면 담임에게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공식 민원과 책임 구조를 맡는 사람”이 됩니다.

교육청은 “학교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전담 인력, 슈퍼비전, 외부 전문가 자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책임 주체”가 됩니다.

5. 학교상담법은 학부모 민원을 상담 업무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교사 업무 과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상담”이 아니라 학부모 민원입니다.

학교상담법이 정말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 문장을 넣어야 합니다.

학부모 상담은 학생 회복을 위한 협력 과정이고, 학부모 민원은 학교 관리자가 책임지는 공식 행정 절차다.

첨부된 10대 원칙도 이 구분을 분명히 합니다. 학부모는 학생 회복의 협력자이지만, 학부모의 민원·항의·반복적 연락·교직원 책임 추궁은 학생상담의 대상이 아니며, 학교장이 책임지는 공식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학부모 민원 처리에 소진되면 학생상담의 본래 목적이 훼손된다고 정리합니다.

이 조항이 있어야 학교상담법은 교사에게 도움이 됩니다.

학교상담법이 없으면, 교사는 학생도 보고, 부모도 달래고, 민원도 받고, 기록도 남기고, 사고 책임도 떠안습니다.

학교상담법이 있으면, 학생 상담과 학부모 민원은 분리됩니다.

교사는 학생을 이해하는 교육자로 보호받고, 민원 처리는 학교 관리자와 공식 절차가 담당해야 합니다.

6. “교사 업무 과중”에 대한 공식 답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상담법 추진 과정에서 반론이 나오면, 답변은 다음 5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상담법은 교사에게 상담 업무를 더 얹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교사에게 떠넘겨진 학생 마음 문제, 민원, 위기관리, 기록, 연계 책임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법입니다.

둘째, 담임교사는 전문상담사나 치료자가 아닙니다.

담임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생활 맥락을 관찰하고, 상담교사와 협력해 학생을 이해하는 1차 교육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셋째, 전문상담은 상담교사의 독립적 권한과 책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상담교사는 검사 결과 처리자나 외부기관 연결 담당자가 아니라, 학생의 내면과 관계 회복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주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넷째, 학교상담법은 반드시 시간·인력·업무경감·수당·법적 보호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공동 사례회의 시간, 행정업무 경감, 슈퍼비전, 전문 자문, 담임교육상담수당, 교사 보호 장치 없이 학교상담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학교상담법은 학생 상담과 학부모 민원을 분리해야 합니다.

학생 상담은 교육적 과정이고, 학부모 민원은 학교 관리자의 공식 책임입니다. 이 구분이 교사를 보호합니다.

7. 더 강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상담법을 방어하는 가장 강한 논리는 이것입니다.

“학교상담법이 없기 때문에 교사의 업무가 늘어난다.”

왜냐하면 현재는 학생의 무기력, 분노, 산만함, 등교 거부, 자해 위험, 학부모 민원, 의료기관 연계, 상담 기록, 사후관리까지 모두 애매하게 학교 현장에 흘러들어옵니다.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분명하지 않으니, 결국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떠안습니다.

학교상담법은 이 애매함을 줄이는 법이어야 합니다.

- 누가 관찰하는가.
- 누가 전문상담하는가.
- 누가 위기 판단을 하는가.
- 누가 의료기관 연계를 결정하는가.
- 누가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는가.
- 누가 상담 기록을 보호하는가.
- 누가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가.

이것을 정리해야 교사 업무가 줄어듭니다.

8. 학교상담법 문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방어 조항

교원 업무 과중 논란을 막으려면, 학교상담법 10대 원칙 안에 다음 표현을 더 분명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1. 업무 추가 금지 원칙

학교상담법에 따른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는 기존 교원의 무급·무보상 추가 업무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2. 행정업무 경감 연계 원칙

담임교사의 교육상담 역할은 행정업무 경감, 상담 시간 보장, 공동 사례회의 시간 보장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3. 전담 인력 배치 원칙

학교상담 체계 운영을 위해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교육지원청 단위 사례관리 전담 인력, 법률·심리 자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4. 관리자 책임 원칙

학부모 민원, 공식 이의제기, 반복적 항의, 책임 추궁은 담임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장 책임의 공식 민원 절차로 처리한다.

5. 교사 보호 원칙

법에 따른 상담·생활교육·사례회의·연계 절차를 성실히 수행한 교원은 민원, 징계,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6. 상담교사 전문성 보장 원칙

상담교사는 행정 처리자나 검사 결과 관리자가 아니라, 학생상담 계획 수립과 상담 기록 보호, 위기 수준 평가, 담임교사 자문을 담당하는 독립적 전문 주체로 보장되어야 한다.

9. 한 문장으로 답하면

학교상담법은 교사에게 ‘이런 것까지 하라’는 법이 아니라, 교사가 더 이상 ‘이런 것까지 혼자 떠안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법입니다.

또는 더 날카롭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의 문제는 교사가 상담을 안 해서가 아니라, 상담·민원·위기관리·행정 책임이 뒤섞인 채 교사에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학교상담법은 그 혼란을 법으로 정리해 교사를 보호하고, 학생을 제대로 만나게 하자는 법입니다.